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8-02

인 천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54888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종교단체 B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피 고	○○시 ○○구청장
변 론 종 결	2024. 3. 8.
판 결 선 고	2024. 4. 5.

주 문

1. 피고가 2021. 9. 14. 원고에 대하여 한 재산세 4,164,640원과 지방교육세 587,650원의 부과처분 중 재산세 1,056,215원, 지방교육세액 124,2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9. 14. 원고에 대하여 한 재산세 4,164,640원과 지방교육세 587,650원의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8-02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및 기초사실

가. 원고는 비법인사단인 교회로 1995. 7. 4. ○○시 C 대 574.2㎡(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라 한다) 중 204분의 17 지분에 관하여 1995. 6. 30.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래, 이 사건 쟁점토지의 지분을 증여받거나 매수하여 왔고, 2021. 4. 2. 이 사건 쟁점토지 중 204분의 18 지분에 관하여 2021. 3. 28.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총 204분의 111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1995. 7. 4. ○○시 D 대 89.9㎡에 관하여 1995. 6. 30.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1992. 11. 6. E 대 424.4㎡(이하 동과 지번으로 토지를 특정한다)에 관하여 1992. 10. 24.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침으로써 D 토지 및 E 토지(이하 '이 사건 부수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시 F 및 이 사건 부수토지에 위치한 지하1층, 지상 5층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일부를 종교시설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 사건 건물의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8-02

일반건축물대장					
대지위치	○○도 ○○시 F, D, E				
대지면적	844.9㎡	연면적	2,308.61㎡		
층수	지하 1층, 지상 5층				
건축물 현황					
층별	용도	면적(㎡)	층별	용도	면적(㎡)
지하	휴게음식점(다방)	264.7	3층	문화및집회시설(교회)	181.82
지하	계단실, 펌프실	28.6	4층	문화및집회시설(교회)	414.34
1층	제1종근생(소매점)	197.76	4층	주택(1가구)	111.4
1층	문화및집회시설(교회)	87.54	5층	문화및집회시설(사택)	199.5
2층	문화및집회시설(교회)	427.43	옥탑2층	계단탑,물탱크실 등 (연면적 제외)	49.2
2층	노유자시설(영유아보육시설)	197.76	옥탑1층	계단탑(연면적 제외)	16.5
3층	제2종근생(사무소)	197.76			
주차장	자주식 옥내 13대(150㎡)				

라. 이 사건 쟁점토지는 이 사건 건물에 인접해 있으며, 그 지상에는 6세대의 주택이 있었으나, 이 사건 쟁점토지의 공유자인 원고, G, H은 2020. 10. 22. 피고에게 위 주택들에 대한 건축물 해체신고서를 제출한 후 위 주택들을 철거하였다.

마. 피고는 2021. 6. 1. 기준으로 이 사건 쟁점토지를 그 지상 주택이 멸실되고 6개월이 경과된 나대지로 보아 그 중 원고가 1995. 12. 31. 이전에 취득한 204분의 17 지분은 분리과세 대상으로, 1995. 12. 31. 이후에 취득한 204분의 94 지분은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삼았으며, D 토지의 면적 89.9㎡ 중 26.64㎡와 E 토지의 면적 424.4㎡ 중 125.76㎡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 본문에서 정한 종교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분리과세 대상으로 보고, 2021. 9. 14. 원고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재산세 4,164,640원 및 지방교육세 587,650원을 부과 및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8-02

물건지	면적(㎡)	과표(원)	토지형태	이 건 재산세 등		
				재산세	지방교육세	합계
C	47.85	86,584,575	비영리사업자 소유 토지	294,387	34,633	329,020
C	264.58	478,757,510	공지(나대지)	2,814,046	428,757	3,242,803
C			재산세 소계	3,108,433	463,390	3,571,803
D	26.64	54,302,976	비영리사업자 소유 토지	184,629	21,721	206,350
D	63.26	128,949,184	종교용 감면 토지	0	0	0
E	298.64	608,747,776	종교용 감면 토지	0	0	0
E	125.76	256,349,184	비영리사업자 소유 토지	871,586	102,539	974,125
D, E			재산세 소계	1,056,215	124,260	1,180,475
재산세 총액				4,164,648	587,650	4,752,298

마. 원고는 2021. 12. 9.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2022. 5. 6.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3. 4. 11.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혹은 형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수토지는 원고가 교회시설로 사용 중인 이 사건 건물의 부지이며, 이 사건 쟁점토지는 교회시설의 부설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8-02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교회시설로 사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부지인 이 사건 부수토지 전체를 종교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할 수 없는바, 이 사건 부수토지 중 일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 본문에 따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준일인 2021. 6. 1. 당시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한 현장 출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쟁점토지는 도색, 포장, 주차구획선 등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상태였으며 원고 교회의 주차장으로 인식할 수 있는 안내 표지판 등도 전혀 없었으므로, 이 사건 쟁점토지는 원고의 의도에 따라 언제든지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나대지로 보아야 하며, 이를 원고 교회시설의 부설주차장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토지를 원고의 종교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 본문에 따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은 '제1항의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8-02

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 6. 8. 대통령령 제317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에서는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제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비영리사업자가 해당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해당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4다5890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부수토지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수토지가 이 사건 건물의 부지로 사용 중인 사실, 이 사건 건물의 연면적(지하 계단실 공용면적 28.6㎡ 제외) 2,280.01㎡ 중 원고의 교회시설로 사용 중인 부분의 면적은 1,606.59㎡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중 약 70.36%만이 원고의 교회시설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부지인 이 사건 부수토지의 면적 중 위 비율에 해당되는 부분 즉, D의 면적 89.9㎡ 중 63.26㎡, E의 면적 424.4㎡ 중 298.64㎡만이 원고의 종교 사업에 직접 사용된다고 봄이 타당한바, 이 사건 부수토지 중 위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만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 본문에 따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피고가 D의 면적 89.9㎡ 중 26.64㎡, E의 면적 424.4㎡ 중 125.76㎡를 분리과세 대상으로 보고 이에 대하여 재산세 1,056,215원, 지방교육세액 124,260원을 부과 및 고지한 것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 본문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8-02

다.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쟁점토지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6 내지 18호증, 을 제1, 2, 8, 9호증의 기재 혹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쟁점토지는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준일인 2021. 6. 1. 당시 이 사건 건물의 부설주차장으로 그 중 일부가 원고의 종교 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한바, 이 사건 쟁점토지의 면적 중 이 사건 건물의 전체 연면적에서 교회시설로 이용되는 연면적의 비율 약 70.36%에 해당하는 부분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 본문에 따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

① 원고의 교인은 2021. 5. 기준으로 190명으로,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준일 2021. 6. 1.에도 원고의 교인 수는 190명에서 크게 변동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며(갑 제6호증), 원고의 교인들 중 상당수가 교회시설 방문 시 차량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갑 제7호증). 그런데 주차대수가 13대에 불과한 이 시건 건물의 옥내 주차장만으로 이 사건 건물의 교회시설을 이용하는 원고의 교인들을 모두 수용하는 것이 어려웠기에, 원고는 교인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일요일 정규 예배(일요일 2부 11:00)를 위해 이 사건 쟁점토지 지상에 주택이 건축되어 있었을 때는 주차위원을 모집하여 교인들의 주차를 관리하였고(갑 제15호증), 이 사건 쟁점토지 지상의 주택을 철거한 이후에는 이 사건 쟁점토지에 교인들로 하여금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준일인 2021. 6. 1. 코로나로 인한 정부의 수도권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에 따라 정규 종교활동 시 수용인원의 20% 이내에서만 참여가 가능하였으나, 피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일요일 정규 예배참석 가능인원이 32명은 넘었을 것으로 보이며, 그 당시 피고가 촬영한 이 사건 쟁점토지의 사진영상(을 제1호증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8-02

의 3)에 의하더라도 그 토지 지표면에 무수히 많은 자동차 바퀴자국이 남아있는 것이 관찰되는바, 그 당시 코로나 방역정책이 시행되고 있었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쟁점토지가 원고의 정규 예배가 있었던 일요일마다 원고 교인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피고가 위 2021. 6. 1. 화요일 및 2021. 9. 15. 수요일, 2021. 12. 20. 월요일, 2022. 6. 7. 화요일에 현지 출장조사에서 촬영한 이 사건 쟁점토지의 사진영상(을 제1 내지 4호증, 가지번호 포함하며, 이하 같다)에서 이 사건 쟁점토지 지상에 주차된 차량이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쟁점토지는 당시 원고의 정규 예배가 있는 일요일마다 원고의 교인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현재까지도 일요일에는 원고의 교인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갑 제17, 18호증). 이와 같이 이 사건 쟁점토지가 정기적·반복적으로 일요일마다 원고 교인을 위한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상 이를 단순한 나대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주일인 일요일에 예배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원고와 같은 교회의 특성을 고려할 때, 단순히 평일에 이 사건 쟁점토지에 주차된 차량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종교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③ 위 2021. 6. 1. 이전부터 이 사건 건물의 옥내 주차장과 이 사건 쟁점토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었으며, 원고가 이 사건 쟁점토지의 경계에 철제울타리를 설치하여 차단기가 있는 이 사건 건물 옥내 주차장의 입구를 통해서만 이 사건 쟁점토지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 사건 쟁점토지의 위치, 형상, 설치구조물 및 출입방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쟁점토지는 이 사건 건물 옥내 주차장의 연장선상에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8-02

있다고 볼 수 있는바, 그 지상에 도색, 포장, 주차구획선, 원고 교회의 주차장으로 인식할 수 있는 안내표지판 등이 존재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쟁점토지를 이 사건 건물의 부설주차장으로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④ 조세법률주의원칙 및 조세형평의 원칙상 비과세요건은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유추해석 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 본문의 적용범위를 넓힐 경우 탈법 목적 부동산 취득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지만, 앞서 본 이 사건 쟁점토지 지상에 주차장을 설치할 필요성, 이 사건 쟁점토지의 사용 횟수와 빈도, 위치, 형상, 지상구조물, 출입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위와 같은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 전부가 원고의 교회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이 사건 쟁점토지는 이 사건 건물 옥내 주차장의 연장선에 있는 부설주차장으로 이 사건 건물의 근린생활시설 등을 이용하는 자도 이 사건 쟁점토지에 주차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쟁점토지 전부를 원고가 '종교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토지의 면적 중 이 사건 건물의 전체 연면적에서 교회시설로 이용되는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만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 본문에 따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쟁점토지 중 이 사건 건물의 종교시설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비과세대상이라고 보아야 하는데,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이 사건 쟁점토지 전부를 과세대상으로 보고 원고가 1995. 12. 31 이전에 취득한 이 사건 쟁점토지의 100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8-02

분 17 지분은 분리과세 대상으로, 1995. 12. 31. 이후에 취득한 204분의 94 지분은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평가하여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을 한 부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쟁점토지 중 분리과세 대상, 종합합산과세 대상별로 종교시설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비과세대상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되어야 하나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한 부분 전부, 즉 이 사건 부수토지에 대한 재산세 1,056,215원, 지방교육세액 124,2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등 참조).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호○○

판사 신○○

판사 임○○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8-02

별지

관계 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② 제1항의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 6. 8. 대통령령 제317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1. 제22조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사업자가 199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8-02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2020. 6. 2. 대통령령 제30728호)

제3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에 관한 특례)

제102조 제8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분리과세대상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대상의 구분이 변경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대상 구분 변경 토지"라 한다)에 대해서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5년까지는 과세대상 구분 변경 토지의 필지별로 다음 표에 따른 과세연도별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은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본다. 이 경우 과세대상 구분 변경 토지의 납세의무자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

과세연도	비율
2020년, 2021년	100/100
2022년	80/100
2023년	60/100
2024년	40/100
2025년	20/100